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804호 2023. 12. 20.(수)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62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62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6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262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항목(운영보전금)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방주차장의 지정 기준을 개정하여 추진사업과 배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에 운영보전금을 신설하여 시설개선이 불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개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6조)

○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주차관리과, 전화 032-560-1964, 팩스 032-560-27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행정팀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항목(운영보전금)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방주차장의 지정 기준을 개정하여 추진사업과 배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에 운영보전금을 신설하여 시설개선이 불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개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6조)
-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차량의 교행이 곤란한 도로에 접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방주차장 운영보전금

제8조제1항 중 “부구청장”을 “개방주차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개방주차 업무담당 국장과”를 “위원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개방주차장 지정 기준)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p> <p>1. 부설주차장의 진출입 구간이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u>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u>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p> <p>나. <u>차량의 교행이 곤란한 도로</u>에 접하는 경우</p> <p>2. ~ 5. (생략)</p> <p>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보조·지원할 수 있다.</p> <p>1.·2. (생략)</p> <p><u><신 설></u></p>	<p>제5조(개방주차장 지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차량의 교행이 곤란한 도로에 접하는 -- <u><삭 제></u></p> <p><u><삭 제></u></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개방주차장 운영보전금</u></p>

관계법령 발췌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⑫ 생략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3 - 262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 전문성과 지역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지정
 -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43,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 전문성과 지역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지정
 -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없음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가정보육과 합의
-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 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보건소) (생 략)</p> <p><신 설></p>	<p>제8조(보건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법규안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기 위함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인혜진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 - 26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2.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이 신거북시장 인정구역이 아닌 거북시장 인정구역에 위치하여 신거북시장에서 거북시장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명칭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판매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이 신거북시장 인정구역이 아닌 거북시장 인정구역에 위치하여 판매시설 명칭을 전통시장 인정구역에 맞는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로 변경
- 신거북시장 판매시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장을 담당부서 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경제정책과, 전화 560-3387, 팩스 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이 신거북시장 인정구역이 아닌 거북시장 인정구역에 위치하여 신거북시장에서 거북시장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명칭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판매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이 신거북시장 인정구역이 아닌 거북시장 인정구역에 위치하여 판매시설 명칭을 전통시장 인정구역에 맞는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로 변경
- 신거북시장 판매시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장을 담당 부서 국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신거북시장”을 “거북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거북시장”를 “거북시장”로 한다.

제3조 중 “신거북시장”을 “거북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거북시장”을 “거북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전통시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장은”을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하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사용허가 신청서 [] 갱신허가 신청서

※ 뒷면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용자 (대표자)	법인명 (단체명)		법인등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여)
	주소	(전화번호)	
사 용 점 포	층 제 호	허가면적	m ²
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 시부터 : 시까지)		
사 용 료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사 용 조 건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판매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3. 설계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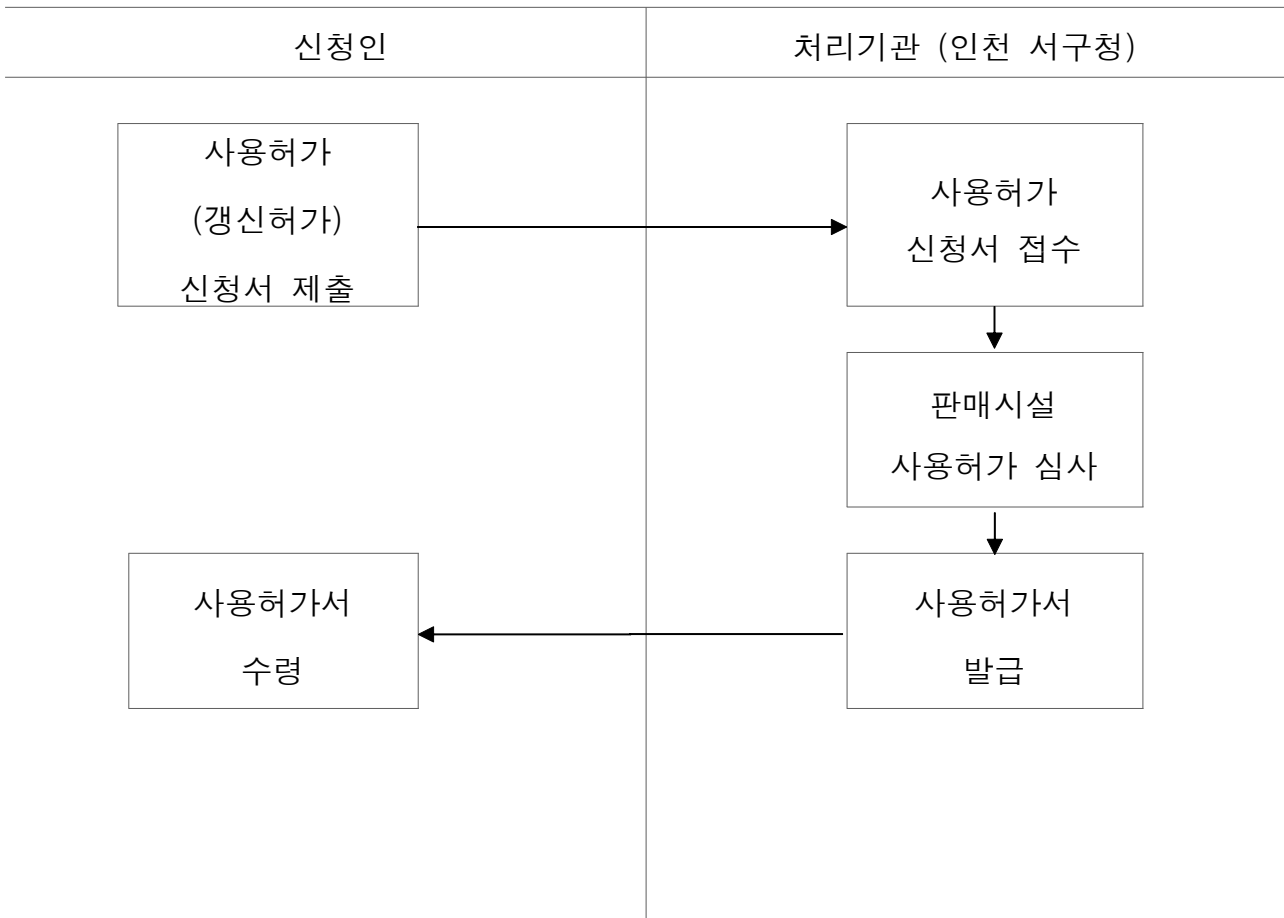
[동의]

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허가 제 호			
공유재산(판매시설 점포) 사용허가서			
허가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용허가 <input type="checkbox"/> 갱신허가		
성명 (법인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용점포	층 제 호	면 적	m ²
사용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p>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p> <p>불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p>			
불임 : 허가조건 1부.			
<p>년 월 일</p>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뒷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물)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층()호 및 그 부지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인천광역시 서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서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결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u>신거북시장</u>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판매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가 <u>신거북시장</u> 주차장 내에 별도 구획으로 마련한 점포 시설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신거북시장</u>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8조(설치 및 기능) ①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u>신거북시장</u> 판매</p>	<p><u>인천광역시 서구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u>거북시장</u> ----- ----- -----.</p> <p>제2조(정의) ----- -----.</p> <p>1. ----- -----<u>거북시장</u>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거북시장</u> ----- ----- ----- -----.</p> <p>제8조(설치 및 기능) ① ----- ----- ----- <u>거북시장</u> -----</p>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 3.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제11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⑤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통시장업무 담당 국장-----.

③ -----
-----.

- 장은 -----.

1. ~ 3. (현행과 같음)

④ -----
하고-----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개의하고-----

③ ~ ⑤ (현행과 같음)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